경상북도 공고 제2026-134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3.

경 상 북 도 지 사

1. 처분 내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상지종합건설(주) (이종규, 이상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1, 상가동 20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위반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과태료 (금4,000,000원)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